

대구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6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656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212457 판결

###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심규현

**변론 종결**2022. 5. 12.

**판결 선고**2022. 6. 9.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212457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 8. 21. 접수 제134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대구 수성구 D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6개동 총 3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출금융기관(이 사건 신탁의 1, 2, 3 순위 우선수익자)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병수

판사왕해진

판사송민화

별지